

# 2019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

## I 회의 개요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 12. 5.(목) 10:00 ~ 12:00
- 장소: 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

### 2. 참석현황

- 참석이사: 전수안(이사장), 권오규, 김형준, 남궁근, 박백범(代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박현애, 오세정, 여정성, 이준구, 지은희, 홍기현  
(이상 10명)
- 불참이사: 구운철, 박용만, 정진성, 최창원, 한호성 (이상 5명)
- 참석감사: 이병률, 윤현철 (이상 2명)
- 배 석: 강준호(기획처장), 신석민(교무처장)

### 3. 회의안건

- 추인 및 심의·의결사항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심의·의결사항  
제1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 설립(안) 관련 정관 및 학칙 개정(안)  
제2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제3호. 2018 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제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안)  
제5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제2호. 임시 이사장 선출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II 회의 내용

### 1. 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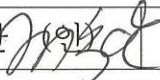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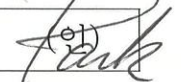
-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전 10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강준호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추인 및 심의의결 사항

#### 제1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 주요내용

- 의결사항
  - 본교 전문대학원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추가(제14조제2항)
  - 과정이수학점으로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추가(제78조제3항제2호차목)
- 추인사항
  -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WCU포함) 정원조정사항 시행일(2020.3.1.) 변경 (부칙 제1조)
  - 대학원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분리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을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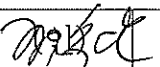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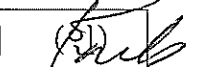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	---	---	--

- [별표 2] 연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 하단 부기사항 변경 및 의학과 학제 전환 관련 부기사항 삭제(제16조 별표2)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변경(제17조 별표3)
  - 연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우주항공공학전공)"를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로 변경
  -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주관대학: 사회과학대학)을 추가, 하단 부기사항에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을 추가, '협동과정 인수공통동물질병학전공' 삭제
- [별표 4] 연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 '기계항공공학부'를 '기계공학부'로 변경 (제17조 별표3)
-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결과 반영(제17조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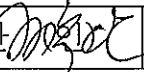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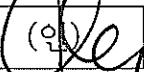

□ 개정(안)

[본문 및 부칙]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자유전공학부를 둔다.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국제농업기술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에 별표1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자유전공학부를 둔다.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국제농업기술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 <u>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u> 을 둔다. ③ 대학에 별표1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신설대학원 명시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 이사 최창원  | 이사 박현애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6조(학사과정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p> <p>②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p>	<p>제16조(학사과정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p> <p><u>〈별표2의 내용 변경〉</u></p> <p>②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p>	
<p>제17조(대학원과정 입학정원) ①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p> <p>② (생 략)</p>	<p>제17조(대학원과정 입학정원) ①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p> <p><u>〈별표3] 및 [별표4]의 내용 변경〉</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8조(과정 이수 학점 등) ①~② (생 략)</p> <p>③ 대학원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p> <p>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나. 박사과정 : 36학점</p> <p>2. 전문대학원 가.~자. (생 략) <u>〈신 설〉</u></p> <p>④ (생 략) <u>〈신 설〉</u></p>	<p>제78조(과정 이수 학점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원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p> <p>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나. 박사과정 : 36학점</p> <p>2. 전문대학원 가.~자. (현행과 같음) <u>차. 테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u></p> <p>④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부칙(제0000호, 2019. 0. 0.)</u>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2020학년도 입학정원」, 별표3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 및 별표4 「WCU 육성 사업 참여 학과·전공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p>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 이사 최창원 (인)  | 이사 박현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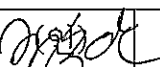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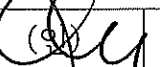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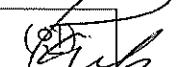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또는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로 입학한 재적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계공학부 또는 항공우주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또는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별표 2] (일부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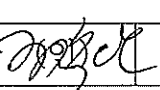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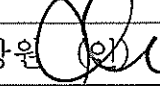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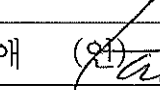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고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u>2019</u> 학년도 입학정원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u>2020</u> 학년도 입학정원	
※ <u>수의학과</u> 입학정원은 <u>2017</u> 학년도 수의예과 입학정원임. ※ <u>의학과, 수의학과</u> 입학정원은 <u>2016</u> 학년도 의예과, 수의예과 입학정원이며, 의학과 정원에는 학제전환(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에 따른 학사편입학 40명을 포함	※ <u>의학과 및 수의학과</u> 입학정원은 <u>2018</u> 학년도 의예과, 수의예과 입학정원임. <삭 제>	의대 학제전환 완료에 따라 정정

[별표 3] (일부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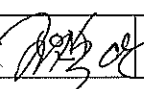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u>2019</u> 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u>2020</u> 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서울대학교	총계	2,632	총계	2,427	서울대학교	총계	2,629	총계	2,42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5계열 72과(부) 30협동과정)	1,743	박사학위과정 (5계열 73학과(부) 31협동과정)	2,34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5계열 73과(부) 31협동과정)	1,731	박사학위과정 (5계열 74학과(부) 31협동과정)	2,324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현 행				개 정(안)				비고
공학계 (10학과(부) 2전공)		공학계 (10학과(부) 2전공)		공학계 (11학과(부))		공학계 (11학과(부))	학과 수 변경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우주항공공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우주항공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신 설>		<신 설>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협동과정 (30전공)		협동과정 (31전공)		협동과정 (31전공)		협동과정 (31전공)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신 설>				평화·통일학전공			신설 반영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전공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운  이사 박현애  (91)

현 행				개 정(안)				비고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우주시스템전공		우주시스템전공		우주시스템전공		우주시스템전공			
	농림기상학전공		농림기상학전공		농림기상학전공		농림기상학전공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글로벌교육협력전공		글로벌교육협력전공		글로벌교육협력전공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줄기세포생물학전공		줄기세포생물학전공		줄기세포생물학전공		줄기세포생물학전공			
전 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과(부) 9전공)	859	박사학위과정 (3학과(부))	83	전 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3학과(부) 9전공)	868	박사학위과정 (4학과(부))	98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	융합과학부	31	융합과학부	58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	융합과학부	30	융합과학부	58	
공학 전문 대학 원	응용공학과	80			공학 전문 대학 원	응용공학과	50			
	<신 설>				데이 터사 이언 스대 학원	데이 터사 이언 스학과	40	데이 터사 이언 스학과	15	신설 반영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 이사 최창원  | 이사 박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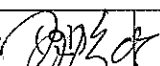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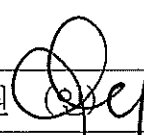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 대학원 석사과정의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전공 존치 ※ 대학원 박사과정의 협동과정 음악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전공 존치 ※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물리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치의생명과학과, 협동과정 의용생체공학전공, 생물화학공학전공, 기술정책전공, 기술경영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u>인수공통동물질병학전공</u> ,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학과(부) 및 전공 존치.	※ 대학원 석사과정의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전공 존치 ※ 대학원 박사과정의 협동과정 음악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전공 존치 ※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물리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u>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u> , 원자핵공학과, 치의생명과학과, 협동과정 의용생체공학전공, 생물화학공학전공, 기술정책전공, 기술경영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학과(부) 및 전공 존치.	-재적생에 대한 거마련 -재적생 졸업으로 전공삭제

[별표 4] (일부발취)

현행					개정(안)					비고
WCU 육성 사업 참여 학과·전공 및 <u>2019</u> 학년도 입학정원					WCU 육성 사업 참여 학과·전공 및 <u>2020</u> 학년도 입학정원					연도 변경
구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구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서울대학교	총계	82	총계	173	서울대학교	총계	82	총계	173	
일반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3	기계항공공학부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42	일반대학원	기계공학부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3	기계공학부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42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전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추인 및 심의·의결함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 이사 최창원  | 이사 박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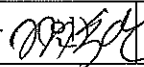






<p>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p> <p>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이를 <u>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u>또는 부속시설의 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

■ 학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7조(부설학교) ① 사범대학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li> <li>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li> <li>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li> <li>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p>	<p>제27조(부설학교) ① 사범대학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li> <li>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li> <li>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li> <li>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p>
<p>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에 위임할 수 있다.</p>	<p>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u>또는 부설학교진흥원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7조의2(부설학교진흥원) ① 각 부설학교를 통할하기 위해서 부설학교진흥원을 둔다.</u></p> <p><u>② 부설학교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설학교의 통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 부설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li> <li>3. 부설학교 교원 급여 및 복지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li> </ol>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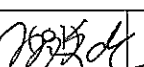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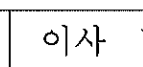

	<p>4. <u>부설학교 교육사업 및 장학에 관한 사항</u></p> <p>5. <u>부설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p> <p>6. <u>부설학교 예산 및 시설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u></p> <p>7. <u>교육실습 지원, 현장교육 연구사업 등 초·중등 교육연구사업에 관한 사항</u></p> <p>8. <u>그 밖에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u></p> <p>③ <u>부설학교진흥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제48조의2(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 ① 부설학교의 발전계획, 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교육부총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u>교무부처장, 사범대학 교무부학장, 사범대학 기획부학장, 부설학교의 장 4명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u></p>	<p>제48조의2(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교육부총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u>부설학교진흥원장, 부설학교진흥원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설학교진흥원장이 된다.</u></p>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 정관 수정사항: 제54조제3항의 ‘필요한 경우’ 를 삭제
  - 학칙 수정사항: 제27조제3항의 ‘필요한 경우’ 를 삭제

제2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 주요내용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제정(안)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부설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설학교 교원에게 적용함

■ 제2장 보수체계(제5조~제6조)

- 봉급월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보수는 봉급, 수당, 실비변상, 성과상여금 등으로 분류함

■ 제3장 호봉확정 및 승급(제7조~제13조)

- 초임호봉의 확정 및 재확정, 정기승급 및 승급의 제한, 승급기간의 특례, 호봉의 정정 등에 관하여 명시함

■ 제4장 보수지급(제14조~제22조)

- 보수지급의 방법, 원천징수 등의 금지, 지급일, 지급 기관 등에 관하여 명시함
-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의 보수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함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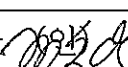


■ 제5장 수당 등(제23조~제27조)

- 수당을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나누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로 나누었으며,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의 지급을 명시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겸임수당, 지원근무수당, 파견근무수당을 신설함 (제23조)
- 각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26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 및 봉급월액을 정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제2장 호봉확정 및 보수지급 (제4조~제5조)

- 초임호봉의 확정과 근속가봉을 명시화함

■ 제3장 수당 등(제6조~제19조)

-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겸임·지원근무·파견수당 등과 교원연구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를 명시화함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2018 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 주요내용

- 2018 회계연도 종합재무상태표 요약(案)

(단위: 억원)

구분	서울대	산학협력단	(재)서울대 발전기금	단과대 발전기금	종합재무상태표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자산(A=B+C)	34,658 (100%)	5,744 (100%)	5,504 (100%)	1,341 (100%)	47,027 (100%)	44,922 (100%)	2,105 (5%)
현금및 현금성자산	3,006 (9%)	4,007 (70%)	2,362 (42%)	204 (15%)	9,579 (20%)	8,041 (18%)	1,538 (19%)
유형자산	30,955 (89%)	1,096 (19%)	193 (4%)	25 (2%)	32,269 (69%)	32,311 (72%)	△42 (△0%)
기타자산 1) 2)	697 (2%)	641 (11%)	2,949 (54%)	1,112 (83%)	5,179 (11%)	4,570 (10%)	609 (13%)
부채(B) 3)	3,249	3,392	134	13	6,788	5,485	1,303
자본(C) 2) 4)	31,409	2,352	5,370	1,328	40,239	39,437	802

간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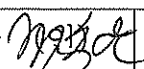


■ 2018 회계연도 종합운영계산서 요약(案)

(단위: 억원)

구 분	서울대	산학 협력단	(재)서울대 발전기금	단과대 발전기금	종합운영계산서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운영수익(A)	7,742 (100%)	6,522 (100%)	1,400 (100%)	91 (100%)	15,113 (100%)	14,726 (100%)	387 (3%)
등록금수입	1,846 (24%)	-	-	-	1,846 (12%)	1,873 (13%)	△27 (△1%)
정부출연금및 보조금 <sup>1)</sup>	4,290 (55%)	-	-	-	4,290 (28%)	4,366 (30%)	△76 (△2%)
산학협력수익 및지원금수익	-	5,229 (80%)	-	-	5,229 (35%)	5,248 (35%)	△19 (△0%)
기부금및 간접비수익	7 (0%)	1,229 (19%)	1,134 (81%)	53 (58%)	2,423 (16%)	1,698 (12%)	725 (43%)
기타수입 <sup>2)</sup>	1,599 (21%)	64 (1%)	266 (19%)	38 (42%)	1,325 (9%)	1,541 (10%)	△216 (△14%)
운영비용(B)	7,906 (100%)	6,394 (100%)	832 (100%)	93 (100%)	14,556 (100%)	14,378 (100%)	178 (1%)
인건비	4,489 (56%)	2,708 (42%)	236 (29%)	4 (4%)	7,196 (49%)	6,553 (46%)	643 (10%)
관리운영비 <sup>3)</sup>	2,427 (31%)	646 (10%)	349 (42%)	31 (34%)	3,025 (21%)	3,475 (24%)	△450 (△13%)
연구비	227 (3%)	2,753 (43%)	45 (5%)	32 (34%)	3,057 (21%)	2,984 (21%)	73 (2%)
학생경비	713 (9%)	286 (4%)	133 (16%)	18 (19%)	1,150 (8%)	1,203 (8%)	△53 (△4%)
기타비용	50 (1%)	1 (1%)	69 (8%)	8 (9%)	128 (1%)	163 (1%)	△35 (△21%)
당기운영차익 (C=A-B)	△164	128	568	△2	557	348	209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전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안)

□ 주요내용

- 2020. 1. 21. 및 2020. 2. 8.자로 임기만료되는 이사 4명(외부 3명, 내부 1명)의 후임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외부 7명, 내부 2명)를 대상으로 최종 이사 선임

□ 심의결과

-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거쳐 참석이사 과반수 득표를 얻은 4명을 2020년 1월 ~ 2월 임기만료 예정 이사들의 후임이사로 선임함
- 외부인사(3명) : 전수안(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연임), 최창원(SK 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연임), 이기형(인터파크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내부인사(1명) : 김병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5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주요내용

- 이사회 의 총장선출방식과 최종후보자 유고 시 대응방안을 규정화함

□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제8조의2(총장 최종후보자 선출) ① 이사회는 총장 최종후보자를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사 1명 이 1표를 행사한다.	· 총장선출방식 규정화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② <u>총장 최종후보자의 유고시 이사회는 남은 총장후보자 중에서 제1항의 방식으로 총장 최종후보자를 다시 선출한다. 다만, 더 이상 총장후보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단계부터 다시 진행한다.</u>	· 최종 후보자 유고시 대응 방안 규정화
<신 설>	<u>부칙&lt;제0000호, 2019. 00. 00.&gt;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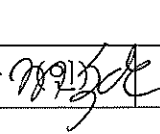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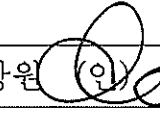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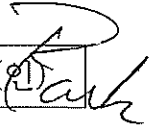
#### 4. 기타 사항

#####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 2020년 제1차 회의를 2020. 2. 13.(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임시 이사장 선출

-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금일 이사로 선임된 전수안 이사장을 2020. 1. 22. ~ 2020년 제1차 이사회 기간 동안 임시 이사장으로 선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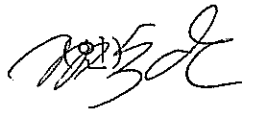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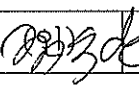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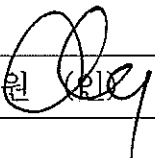



## 5. 폐회

-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이사장이 오전 12시에 폐회를 선언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간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